

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의안 번호	3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0. 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제안이유

-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상 차종구분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구분이 상호 불일치함에 따라
- 동조례의 차종구분을 명확히하여 현주차요금 징수실태의 주차요금징수 근거를 확립하고자 함.

□주요골자

가.주차장을 사용하는자는 별표와같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(안조례제3조1항)

주 차 요 금 표

차 종	1 회 주 차 요 금		3시간이상 주 차 시	비 고
	최 초 2시간까지	2시간 초과시 10분마다		
승용자동차, 경형 및 소형자동차	2,000원	200원	3,200원	
중형자동차	3,000원	200원	4,200원	
대형자동차	4,000원	200원	5,200원	

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【별표】 “주차요금표”를 별지와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주 차 요 금 표

차 종	1 회 주 차 요 금		3시간이상 주 차 시	비 고
	최 초 2시간까지	2시간 초과시 10분마다		
승용자동차,경형 및 소형자동차	2,000원	200원	3,200원	
중형자동차	3,000원	200원	4,200원	
대형자동차	4,000원	200원	5,200원	

비고)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되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
준하여 적용하고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행					개정안					개정사유
(별표) 주차요금표					(별표) 주차요금표					주차요금 표 상 차종중 경형 및 소 형자동차를 현 주차요 금 징수 실태와 일 치하게 징수 근거 마련